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명(16종)을 의료기기법령 상 품목명과 일치하도록 개선

- 환경부와 식약처 고시 간 품목명이 동일한 경우(12건)는 해당 품목만 인정, 그 외(4건)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면제 인정(면제대상 16종 → 34종 확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945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65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①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②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 ①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 부여 ②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 기준 현실화

다.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층 환경부 자원

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에 따라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았을 시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작성대상 합리화(안 제89조)

1) '20.7.1.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하는 대상이 확대(공사금액 4천만원이상→2천만원이상)되었으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행정역량이 부족하고 계상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소액임에도 미이행 시 처벌이 과도하여 작성대상의 합리화 필요

2) 4천만원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보존 의무를 면제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함

나.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 갈음 규정 신설(안 제162조제9항)

1) 「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심사제도(“21.1.16 시행)”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심사제도(“21.1.16 시행)이 각 도입되었으나, 심사대상이 혼합물(화학제품)인 경우 심사내용이 중복됨

2) 화평법 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MSDS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중복 심사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함